

의안번호	2216561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6.4.7.
추계번호	26D0656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2조의3 (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)	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2조의3(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92조의3)

-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, 현재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GIS(Geographic Information System, 지리정보체계) 기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,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 중임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·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 개정안에서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서 구현할 기능 및 서비스, 공간정보 구현방법 등에 따라 구축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, 공유재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

[참고] 행정안전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

- (추진일정) '26 ~ 29(약 3년)
 - ※ ISP('26) → 인프라 구축·시스템 개발('27~28.上) → 시범운영('28.下) → 시스템 개통('29)
- (추진방법) 한국국토정보공사(LX)를 「전자정부법」 제71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위탁 및 외부용역 발주
 - ①토지·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성 보유,
 - ②기존 인프라(GIS, AI정보 등) 활용
 - ③영상정보, 건축물·토지대장, 도시계획 등 총 31종 시스템 연계 가능
- (소요예산) 총 8,745백만원(국비* 242백만, 지방비** 8,503백만)
 - * 국가-지방 공동이용 시스템 개발 ISP 수립
 - ** 지자체 행정업무를 위한 시스템 개발, HW 및 SW, 감리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

[참고 1]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 주요 변경내용

구분	現 시도·서울행정시스템	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
행정 내부	•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 정보 미제공, 다른 시스템과 연계* 부족 *공유재산 총조사('24~'25년) 시 공유재산대장과 3종공적장부 간 불일치 163만 건 발굴 •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한 전·후 검증기능* 부족으로 횡령 등 재정누수 발생 * (예시) 매각시 낙찰가격-계약서 상 가격-징수액-수납액 일치여부 자동확인 등	• AI·GIS 등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 제공·활용, 다른 시스템*과 연계 강화 *3종공적장부(부동산등기부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), 온비드, 위택스, K-Geo, e호조, 도로명주소, 토지이용계획 등 • 대장 간 불일치 누락재산 자동 분석·발굴 •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기능* 도입 및 이상징후 확인시 알림기능** 강화 * (예시) 매각 단계별 증빙자료 첨부여부 검증, 매각 단계 간 입력수치 일치 여부 등 확인 ** (예시) 감사실·총괄재산관리관에 자동 통보
대민 서비스	•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없음 • 공유재산 기본현황, 유휴재산 정보 등이 엑셀 형태로 지자체별 누리집에 공개되어 식별 곤란 • 대부·매각은 대면 계약으로 진행되어 원거리 거주자 불편 발생	•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구축 • 유휴재산 및 사용·대부 중인 공유재산 현황 실시간 공개, 온라인 수의계약 기능 도입 • 공유재산의 입찰, 계약, 사용료·대부로 납부 등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유관 사이트 연계
디지털 전환	• 최신기술을 활용한 관리기능 활성화 요구에도 미활용 중	•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무단점유 적발, 신규시설 최적입지 도출 등 신규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·체계적 관리 지원

자료: 행정안전부